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 점검 총괄 현황

연번	관련법령	점검내용	이행사항		자문의견
			진행사항	세부 이행내용	
1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해당사항 없음	산업재해 발생이력 없음	▪ 적정(향후 유의사항) - 산업재해는 산안규칙 73조(산업재해보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3일이상의 재해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일반적으로 3일 이내라 하더라고 사고성 재해(중대성 아차사례 등 포함)에 대한 수집 및 보고절차를 마련하고 위험성평가 등에 환류 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운영 권고
2	법 제4조 제1항 제3호	중앙행정기관 등 개선, 시정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해당사항 없음	개선·시정 명령 없음	▪ 적정
3	시행령 제4조 제1호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완료	○ 서울시설공단의 안전·보건 경영 방침 및 목표 설정(안전처) → 이사장 방침 제122호(2021.12.23.) 2022년 안전보건관리계획	▪ 적정(향후 권고사항) - '의무사항 이행점검표' 항목에 '이사회 의사록'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항목도 고려 권고
			완료	○ 공사감독처 안전·보건 경영 목표 설정 → 공사감독1처-164(2022.01.12.) 2022년 공사감독처 안전보건관리계획	▪ 적정
			완료	○ 사업장 내 안전·보건 경영 방침 및 목표 게시	▪ 권고 - 의무사항 이행점검 시 '사내' 게시만이 아닌 이해 관계자(외부)를 대상으로 충분히 알리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검기록 권고

연번	관련법령	점검내용	이행사항		자문의견
			진행사항	세부 이행내용	
4	시행령 제4조 제2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완료	○ 이사장 직속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안전처(산업안전보건팀, 재난관리팀, 중대재해예방팀)	▪ 적정
			완료	○ 부서 내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에 대한 의무는 없으나 중대재해처벌법 효율적 이행을 위한 본부 내 별도 T/F 운영 中	▪ 적정
5	시행령 제4조 제3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완료	○ 공사감독처 위험성평가 추진계획 수립	▪ 적정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확인	완료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감소대책 수립	▪ 권고 -「의무사항 이행점검표 內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가. 위험성평가 참여자 참여여부'」에 '일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출입하는 사람' 문구도 첨부 필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여부	완료	○ 부서별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 권고 - '의무사항 이행점검' 시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실시결과보고', '교육결과 보고' 등의 확인은 적정하나 '실제 일부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는 불명확하므로 이의 확인서류도 첨부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
6	시행령 제4조 제4호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인력, 시설, 장비 등)	완료	○ (인력) 부서별 관리감독자(부서장) 및 안전담당자 등 안전·보건 인력 배치 완료	▪ 적정
			완료	○ (시설, 장비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련 예산 확보(91.5백만원) 및 집행(24.4백만원)	▪ 적정

연번	관련법령	점검내용	이행사항		자문의견
			진행사항	세부 이행내용	
7	시행령 제4조, 제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완료	○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 → 관리감독자(부서장)의 업무수행을 평가 할 수 있는 평가지표 수립 (부서 BSC 평가와 연계)	▪ 적정
			상반기 완료	○ 평가지표에 의거 평가 완료	▪ 적정
8	시행령 제4조, 제6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정해진 수 이상 배치	완료	○ 공단 안전처 내 법정 안전관리자(3명) 및 보건관리자(2명) 배치 완료	▪ 적정
			완료	○ 공사감독처 내 법정 안전관리자 배치에 대한 의무는 없으나 부서별로 안전담당자 1인을 배치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 도모 → 공사감독1처: 건설안전기사 자격 보유한 전담 안전담당자 1인 배치 → 공사감독2,3처: 안전업무 겸직, 안전담당자 각1인 배치	▪ 적정
9	시행령 제4조 제7호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	해당사항 없음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여부 반기1회 이상 점검 → 공단 안전처 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중(분기1회)으로 공사감독처 개선 필요사항 없음	▪ 적정
			완료	○ 공사감독처는 별도의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에 대한 의무는 없으나 '2022년 공사감독처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근로자 의견청취 방안을 마련 및 정기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의견청취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 적정 - 향후 근로자의견 中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은 위험성평가 등급에 관계없이 조치·이행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중처법 상 유해·위험요인의 발굴 및 제거라는 의미는 위험성평가 기준에서 말하는 고위험, 저위험을 구분하지 않음. 즉, 저위험등급에서도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제기하는 위험정보의 기록은 반드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요약 기록 하는 것이 좋다 사료됨.

연번	관련법령	점검내용	이행사항		자문의견
			진행사항	세부 이행내용	
10	시행령 제4조 제8호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제정 및 조치 여부 점검	완료	○ 공사감독처 중대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제정 완료	▪ 적정
			진행중	○ 부서 특성에 맞게 일부내용 개정 예정(6월중)	▪ 의견없음
11	시행령 제4조, 제9조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절차 마련 및 점검	해당사항 없음	○ 공사감독 대행 업무는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 의견없음
12	시행령 제5조 2항 1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점검	완료	○ 산업안전보건법 상 13개 항목에 대해서 이행여부 점검 완료 → 4개 항목 이행완료 확인(9개 항목 해당사항 없음)	▪ 적정
13	시행령 제5조 2항 3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 점검	완료	○ 정기교육(근로자, 관리감독자) 및 채용시 교육 이수 확인 완료	▪ 적정
14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관련 기타사항				▪ 의견없음

2022. 6. 20.

점 검 자 : 복 훈 (서명)